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56호 2011. 10. 17.(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741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745호(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1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 - 74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환급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불합리한 사항이 존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정권고 요청이 있어 우리구 지하수조례에 반영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안 제17조의2)
- 부담금부과에 불복시 납부의무자의 충분한 권리를 위한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안 제19조 내지 제23조)
- 부담금의 환급방법절차, 환급가산금(이자)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9조의2)
- 부담금 감면·면제시 공개제 도입(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연수구 원인재로 115, FAX : 032-810-7419, ☎ 032-810-7931/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구정에 바란다')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시행 2007.12.29] [연수구조례 제572호, 2007.12.29, 제정]

연수구 (건설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지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규

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8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기타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5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
3.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100%
4. 구 또는 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100%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50%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8조(가산금) ①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0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 협의 및 의견 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 74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 10. 4일자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개정조례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통·반조직 관리에 혼돈을 방지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의 임기를 “만60세” 에서 “만65세” 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103, FAX 810-710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4(통장의 임기만료)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장의 임기는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1년 10월 4일 이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4(통장의 임기만료)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장의 임기는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2조의4(통장의 임기만료)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장의 임기는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